다시
인간의 존엄을
선언하자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2차 원탁회의

일시 ● 2015년 5월 9일(토) 오후 1시~6시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순 서

■ 등록 | 1:00~

■ 논의 1 | 1:30~ 03

416인권선언운동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토론

■ 논의 2 | 3:00~ 08

416인권선언 토론자료 검토

■ 논의 3 | 4:30~ 19

416인권선언운동의 이후 계획과 추진위원의 역할

아래의 문서를 바탕으로 416인권선언운동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토론해주십시오. 오늘 토론되는 내용은 추진위원들 모두가 공유하며 앞으로 이어질 풀뿌리간담회를 통해 퍼져나가야 할 내용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는 뒤에 첨부합니다.)

논의 1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운동을 제안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모두 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의 사회는 달라져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약속을 지킵시다. 참사 이전의 사회와 단절을 선언하고, 참사 이후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함께 밝히자고 제안합니다.

1.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현실을 기억합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모두 약속했습니다. 끝까지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2014년 4월 16일 아침,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를 포함한 304명의 희생자가 우리 곁을 떠났다는 것 외에 우리는 아직 함께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과 국민이 따로 또 같이 1년이 넘는 시간을 겪으며 우리는 수많은 경험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억울함, 분노, 절망으로 우리를 내몰았던 경험들 말입니다. 그것에 이름을 붙여본다면, 인간의 존엄이 훼손된 경험이라고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저 안타깝고 슬프고 화나는 일을 겪은 것이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하나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존엄을 훼손하고 무시한 결과, 참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회가 만들어졌고, 여전

히 그 사회는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우고, 정부는 국민의 권리보다 권력의 보호에 골몰하며, 어떤 이들은 공감과 연대보다 모욕에 익숙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개개의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맞물려 우리를 억압하는 힘을 더욱 발휘하는 구조임을, 우리는 목격하고 확인했습니다. 이런 구조가 세월호 참사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미래에도 우리의 존엄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 역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달라져야 하는 것은 몇몇 문제에 그치지 않는 구조 자체입니다. 혼자서 조심하고 피한다고 해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낳은 구조가 견고할수록 우리는 더욱 손잡고 연대해야 합니다.

3. 무엇이 안전인지, 인간의 존엄에 기초하여 우리가 말합시다!

누구나 존엄과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할 안전은 어떤 가치인가요? 누군가 나서서 지켜주기를 바라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제각각 경쟁하며 구매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험을 줄이고 참사의 피해를 줄이는 것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취약한 개인이나 집단에 더욱 큰 위험을 떠넘기는 구조에 맞서 근원적인 평등을 이루는 것이 안전입니다. 우리의 삶을 구속하려는 공포와 비참으로부터 함께 자유로워지는 것이 안전입니다. 구조적 억압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체에 참여하며 실천하는 연대가 안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려는 안전이 무엇인지 충분히 따져보지 않는다면 자칫 우리가 원하는 정반대의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가 툭 하면 말해온 안전은 오히려 우리의 자유와 평등, 연대를 해쳐왔기 때문입니다.

4.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수많은 참사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잊어왔습니다. 언제나 비슷한 문제들이 드러났지만, 못이긴 척 정부가 나서서 누군가를 엄벌에 처하겠다거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면 그런가보다 하고 잊었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는 피해자들이 있으면 보상이 부족한가보다 하고 남 문제로 여겼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진실과 정의, 배상과 재발방지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는 거래나 선택을 강요당해서는 안 됩니다. 실종자, 희생자, 생존자와 그 가족들, 그들을 돕거나 피해를 막기 위해 나섰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우리가 어느새 우리를 위험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가 곧 우리의 권리임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5. 다른 사회를 열기 위한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안한 마음을 가슴 한편에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안함은

무엇에 대한, 무엇을 향한 미안함일까요? 혹시 누군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의 무게를 대신 나눠 진 채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인권의 시선으로 책임을 밝혀야 합니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이라는 기초 위에 서 있는 푯대입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하지 못하는 정부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의 구조에 개입된 기업, 언론 등의 행위주체들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우리의 미안함은 우리를 짓누르는 상처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책임져야 할 자가 책임질 때, 우리는 참사로부터 자유로운 사회에서 우리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책임을 묻는 행동은 우리의 정치적 책임이자 권리입니다.

6.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은 행동입니다!

권리는 선물이 아닙니다. 시대와 장소를 넘어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역사가 인권입니다. 국제인권법과 헌법이 이미 제시하는 수많은 권리들은 누군가의 치열한 투쟁이 남긴 기록입니다. 앞서 겪은 사람들의 증언에 귀 기울이며 우리 스스로 목소리 내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달라져야 할 것을 고집하는 세력에 경고하며 우리의 권리를 현실에 새깁시다. 모두의 생명과 안전, 자유로운 표현과 결사, 인간다운 노동과 생활 등 우리 스스로 인권의 목록을 써내려갑시다. 모르는 것이 있다면 함께 배우면 되고 부딪치는 의견이 있다면 함께 토론하면 됩니다. 세상을 바꿔온 것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감각을 놓치지 않으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박한 상식과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함께 선언하는 우리가 바로 살아있는 인권입니다.

2016년 4월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인권선언을 선포합시다.
그때까지 함께 선언할 사람들을 조직합시다.
416인권선언운동의 취지와 목적을 알리는 작은 간담회를 열어 첫발을 떼어주십시오.

첨부_4.16인권선언운동 진행경과

1. 존엄과 안전위원회, 인권선언을 모색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는 인권활동가들을 중심으로 4.16참사 대응을 위해 구성한 기구다. 4월 16일 이후 펼쳐진 현실에서 자유팀, 평등팀, 안전대안팀을 두어 참사와 인권의 문제에 대한 접근을 시작했다. 특별법 제정 운동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 대응을 위한 행동을 이어가는 한편, 우리 사회가 생명과 존엄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인권선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인권활동가들과의 워크숍을 시작으로, 재난안전가족협의회, 노동안전보건단체, 안전 관련 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거쳐 인권선언운동의 방향을 잡아나갔다.
2014.5.4. 인권단체 긴급 회의
2014.5.13. 존엄과안전위원회 제안 간담회, 이후 자유/평등/안전대안팀으로 활동 시작.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에 결합하여 특별법 제정 운동을 함께 벌임.
2014.10.14. 인권선언 워크숍. 이후 기획회의 시작.
2014.11.13. 재난안전가족협의회와의 간담회
2014.11.25. 존엄과안전위원회 안전대안팀 소속 단체들과의 간담회

2.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4.16인권선언 추진을 제안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는, 4.16인권선언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2014년 12월 10일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추진대회〉를 열었다. 세월호 가족뿐만 아니라 기존 참사 피해자들이 한마음으로 인권선언의 필요성을 말해주었고, 참사 이전의 사회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떤 권리들이 선언되어야 하는지 밑그림을 제시했다. 추진대회 이후 인권선언의 틀을 만드는 성안팀이 구성되어 집중토론을 시작했으며 인권선언 기획팀을 구성하여 추진 로드맵을 만들어갔다.

2014.12.10.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추진대회
2015.1.26.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간담회
2015.2.5. 성안팀 1차 회의. 이후 1~2주 간격으로 회의 진행하며 집중토론.
* 성안팀 참여 추진위원 :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박은희(416가족협의회), 정경원(재난안전가족협의회), 윤지영(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손진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정정훈(수유너머 R), 김일란(연분홍치마), 박상은(사회진보연대), 두인(인권운동공간 '활'), 이가원(유엔인권정책센터), 미류(인권운동사랑방)
2015.2.10. 노동안전보건단체들과의 간담회

3. 인권선언 제정위원회 준비회의 개최

2015년 3월 12일, 416인권선언 제정위원회 준비회의를 열어 이후 인권선언운동을 추진할 기구

구성에 대해 토론하였다. 인권선언 추진에 함께 할 제정위원 50여 명이 모여 제정위원회 구성 건과 추진 로드맵 건을 논의하였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열어놓되 적극적인 책임을 맡아줄 일정 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4월에 다시 모여 4.16인권선언 제안문을 검토하여 이후 전국적인 풀뿌리토론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실행을 맡을 단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위원들 중 자원을 받아 실행팀을 구성했다.

2015.3.12. 416인권선언 제정위원회 준비회의
2015.3.20. 인권선언 실행팀 첫 회의. 이후 조직팀, 토론기획팀 등을 구성하여 집중 논의 진행.

4. 인권선언 추진단 구성을 위한 원탁회의 개최

인권선언 실행팀은 특별법 정부 시행령안의 문제와 진실과 거래시키려는 배보상 절차의 문제 등을 지적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조직했다. 인권선언운동을 벌여가기 위해 전국적으로 304인의 추진위원을 섭외하기 시작했고 발의문 채택을 위한 논의 준비를 시작했다.

2015.4.7. 성안팀 7차 회의. 발의 제안문 최종 검토.
2015.4.8. 〈세월호 참사 1년, 존엄의 훼손 앞에 분노한다〉 인권옹호자 기자회견 개최.
2015.4.14. 416인권선언 추진단 구성을 위한 원탁회의
2015.5.7. 416연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416연대 주요 사업으로 채택.
2015.5.9. 416인권선언 2차 원탁회의

4.16인권선언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토론자료를 제안하기까지

1.
지난 4월 14일에 열린 존엄과 인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추진단 구성을 위한 원탁회의 자리에서는 4.16인권선언 발의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되었습니다. 토론을 진행한 결과 성안팀에서 제출한 발의문은 채택하지 않고 수정, 보완하여 5월 9일 원탁회의 자리에서 다시 채택여부를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2.
지난 원탁회의 이후 진행된 성안팀을 포함한 실행팀은 발의문 수정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발의문 수정을 위한 토론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발의문을 작성해야할 성안팀은 치열한 토론을 진행하면서 4.16인권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 결과 4.16인권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언문의 자구를 완성도 있게 마련하는 것보다 이 선언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생각을 나누며, 고민을 더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4.16인권선언 '운동', 선언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3.
그것은 이 선언문을 함께 만들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선언문 작성을 위한 개입의 지점이 열려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안팀은 수정된 발의문을 5월 9일 원탁회의에 제출하는 것보다는 선언문을 함께 만들기 위한 토론의 자료를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완성본'의 형식을 취한 것이 오히려 토론의 폭을 좁힌 면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완성본의 형식을 해체하여 토론의 장벽을 제거하고 토론을 촉진하기 위한 문서로 고쳐서 제출합니다. 4.16인권선언이 어떤 현실인식, 문제의식, 방향

설정에 입각하여 구성되어야 하는지, 어떤 원칙에 입각하여 선언문을 만들어가야 하는지, 선언문에는 어떤 권리들이 담겨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이를 토론하기 위한 방향을 담아 “4.16인권선언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토론자료”로 제출합니다. 문서의 ‘예시’는 성안팀이 작성한 문안에서 고른 것입니다.

4.
이 토론자료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풀뿌리 토론을 전개해가면서 그 결과를 받아서 4.16 인권선언문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제안합니다. 완결된 선언문 초안에 대한 찬반여부나 동의여부를 토론하기 전에, 혹은 초안을 수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 이전에 선언의 정신과 방향부터 함께 토론했으면 합니다. 선언의 문장 보다는 선언의 정신을, 선언문에 표현된 권리들의 적절성 보다는 그러한 어떤 권리들이, 왜, 어떤 내용으로 담겨야하는지를 먼저 함께 토론했으면 합니다.

5.
이런 목적을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는 토론자료를 만들기 위해 논의에 적극적인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함께 만들기를 위한 토론자료

1. 416 인권선언제정을 위한 전국단위 토론을 제안하며

416참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인간이긴 한 건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인간존엄의 가치를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버려지고 아픔은 조롱거리가 되었으며 진실요구는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돈이면 다된다는 삐뚤어진 가치관으로 권력과 기업이 거대한 참사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이러한 참사를 막기 위해 미리 손잡지 못했습니다. 인간 존엄가치가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을 가슴이 먹먹해지도록 지켜보고서야 비로소 이제라도 힘을 모아 스스로를 지켜내야 한다는 절실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할 권리들 그러나 빼앗긴 권리들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생활을 확보 받을 권리, 생명구조를 최우선으로 요구할 권리, 진실을 알 권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권리, 물질적 배상과 정신적 위로를 받을 권리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한 권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박한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치권, 기업, 그리고 일부 단체들은 416참사 이전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진

실은 은폐하고 책임자의 반성과 사과는 없으며 같은 인간으로서 겨우 잡은 손을 거두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춘다면 또 다른 참사는 어디에선가 준비될 것이며 우리 중 누군가는 그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또다시 정부와 언론의 최면에 우리의 마땅한 권리를 빼앗기고 살지 않기 위해 416 참사가 우리에게 상기 시켜준 인권에 대해 남녀노소 모든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언어로 말할 때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목소리로 지킬 때입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2. 전문에 관하여

인권선언의 전문(前文, preamble)은 **문서를 작성하게 된 역사적 맥락과 목적과 이유, 문서에 나오는 전체 내용의 간략한 소개 등을 담습니다. 성안팀은,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참사에 대한 진단, 참사의 구조에 대한 인식과 분노와 비판, 그것을 변혁하기 위한 방향 등을 담아 아래의 예시와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1) 전문에 담겨야 할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형식과 표현에 앞서, 선언을 선포하는 모두의 마음과 인식을 담아 꼭 드러나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2)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진단하며, 무엇에 분노하나요?

3)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교훈으로 무엇을 바꾸길 원하며, 그때 특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생명과 존엄성이 모든 법과 제도, 가치와 신념, 계획과 실천의 기초임을 확인하며,
이 기초를 무시하고 훼손한 결과가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여러 참사였음을 반성하고 통탄하며,
이윤을 최고로 여기고 인간을 물건처럼 다루는 세태를 지켜만 보고 내버려 둔 시민의 정치적 책임의 회피가 그 원인임을 인정하며,
여러 참사에서 드러났듯 우리를 덮치는 위험은 연대가 무너진 사회와 실종된 정치에 뿌리내리고 있기에, 이런 위험은 제각기 조심하고 피한다고 해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근본적이고 거대한 것임을 절실하게 느끼며,
그간의 참사 책임에 대해 모든 게 운명이며 모두가 죄인이란 식으로 물타기로 대응해온 사이비책임론을 거부하며,

세월호 참사 등은 정부와 공직자 및 해당 기업이 인권침해의 가해자로서 책임져야 하는 사안임을 명백하고 단호하게 확인하며,
모든 참사의 피해자에게는 진실을 밝힐 권리, 정당한 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징계할 권리, 배상받고 치유 받을 권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변혁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며,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기는커녕 점점 세게 짓밟으려는 한국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건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에 귀 기울이며,
사회정의의 기초가 반듯하게 놓일 때에야 누구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받고 지속가능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깊이 느끼며,
우리가 추구할 안전은 자유를 포기하는 대가로 거래하거나 제각기 살아남자는 경쟁 속에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존중하는 환경 속에서 타인에 대한 관심과 연대로 공포와 비참에서 함께 자유로워지는 것이라 여기며,
모든 참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존중하는 것은 애도와 기억, 사죄와 배상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를 반성하고 바꾸려는 실천임을 다짐하기에,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기만하며 불의한 구조를 온존시키려는 세력에게 엄중히 경고하며,
모든 참사 피해자에 대한 존중과 한국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책임을 담아
이 선언을 선포한다.

3. 원칙에 관하여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에는 구체적인 권리의 목록들이 포함됩니다. 우리의 선언에 담길 권리목록은 어떤 원칙에 입각하여 구성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인 인권선언이 아니라 참사의 경험, 진실규명을 위한 투쟁, 이후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고민을 담은 인권선언의 권리 항목을 구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가령 '인간 존엄성 존중'을 원칙으로 내세웠다면, 그 아래 나오는 구체적인 권리들은 단순히 법적으로 주어진 권리만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에 호소하는 권리까지를 포괄합니다. 또한 '평등의 원칙'은 그 아래 나오는 어떤 권리에 대해서도 차별과 배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권리 조항을 다루기에 앞서 일반조항 내지는 원칙을 제시하는 것은 UN 및 국제 인권기구들 등에서 작성된 동시대의 국제인권문헌이 취하는 방식이기도 함을 알려드립니다.

1) 우리는 4.16 인권선언에서 어떤 원칙을 세우고 강조해야 할까요? 선언에 들어갈 권리항목을 관통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2) 성안팀에서는 '인간 존엄성 존중의 원칙', '평등의 원칙', '연대의 원칙', '피해자 존중의 원칙' 등 네 개의 원칙을 꼽아봤습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이 구체적 권리항목을 구성하는데 적합한 원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성안팀에서는 각 원칙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 설명이 충분한 것인지, 보완되어야 할 것은 있는지 함께 토론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시)

인간 존엄성 존중의 원칙
인간의 존엄성은 인권의 기초중의 기초이다. 존엄성을 계산해서도 안 되고 타협과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 정부는 모든 정책과 실천에서 인간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최우선은 생명을 구조하는 것이어야 하고, 재난의 예방·구제·사후조치의 모든 단계에서 누구나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한다.

평등의 원칙
인간 존엄성에 위계와 등급을 매기는 차별은 존엄성 훼손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다른 누군가에 비해 가치가 덜하거나 더한 존엄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평등한 사회가 안전하고 불평등한 사회는 위험하다. 근원적인 평등이야말로 안전을 위한 길이다. 어떤 국적·신분·지위·나이·성별 등을 가진 사람이건 재난의 예방·구제·사후조치의 모든 단계에서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연대의 원칙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살아간다. 강자에 의한 약자에 대한 구조적 억압을 제거하려는 실천이 연대이다. 연대를 통해 시민들은 공동체적 삶에 참여하며 사회적 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각종 참사는 연대의 고리가 약해졌을 때 발생하며 확대된다. 안전은 연대가 강화될 때 보장된다.

피해자 존중의 원칙
참사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피해자는 피해자이기에 앞서 국제인권법과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모든 권리의 보유자이다. 피

해자는 자신의 인권에 기초해서 피해자에게 당연히 보장돼야 할 권리를 가진다. 피해자의 권리 중 핵심은 진실규명, 가해자 처벌을 포함한 정의실현, 배상, 재발방지와 제도개혁에 대한 권리이다. 이 권리들은 포괄적이고 상호 연관된 조치를 필수로 한다. 피해자는 필수적인 조치들 간에 거래나 선택을 강요받아선 안 된다.

3. 용어 정의에 관하여

지난 4월 14일 원탁회의에 제출된 4.16인권선언 발의문에는 용어정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권침해, 참사,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명시함으로써 우리의 선언이 이 용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와 그 이전의 각종 참사들이 인권침해로 이해되지 않았으며 이후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배상과 보상의 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무시되고 오히려 피해자가 비난을 당하였으며 올바른 사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활동과정에서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경험을 반영합니다. 성안팀에서는 인권침해, 참사, 피해자에 대하여 유엔의 '재난경감국제전략' 등의 문서를 참조해서 용어정의를 해봤습니다.

1) 용어 정의가 필요한 개념이 이것 말고 또 있을까요?

2) 인권침해, 참사, 피해자에 대한 정의에서 무엇을 보완하거나 고쳐야 할까요?

(예시)

인권침해

일반적으로 인권침해는 국제인권규범과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장된 인권을 개인적 및 집단적 차원에서 침해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할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침해의 심각성은 침해된 권리의 성격, 침해의 규모, 피해자의 취약성, 침해가 끼친 영향으로 판단된다. 특히 생명권과 그에 따른 국가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와 관련하여 재난 위험을 방치하거나 그 영향을 줄이지 못한 정부는 인권침해의 책임이 있다. 정부의 행위 또는 태만으로 인한 재난 피해는 명백한 인권 문제이다. 모든 위험이 그 자체로 재난이 되는 것은 아니다. 누가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훨씬 취약하며, 사고 시 어떤 복원력을 갖췄느냐에 따라 단순 사고 또는 자연 재해가 인간이 만든 참사가 될 수 있다. 위험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예방 행위를 취하지 않고, 복원력을 강화하지 않고, 효과적인 고통의 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부의 잘못은 인권 침해이다.

피해자
피해자는 국제 및 국내 인권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 감정적 고통, 경제적 손실, 기본적 인권의 실질적인 침해 등을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겪은 사람이다. 피해자에는 직접적인 피해자와 그 가족뿐 아니라 피해자를 돕거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입하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도 포함된다.

참사
참사는 소중한 생명의 상실, 엄청난 인간의 고통과 곤란, 또는 심각한 물질적·환경적 손실을 야기함으로써 사회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재앙적인 사건 또는 이어진 사건을 의미한다. 참사는 세월호 참사의 경우처럼 사건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4. 일반적 권리와 피해자의 권리에 관하여

보통의 권리선언이라면 구체적 권리 조항은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순으로 나열될 겁니다. 그런데 4.16 인권선언은 참사와 관련된 특수한 인권문제를 다루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특수한 권리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으로부터 나옵니다.
성안팀은 우리가 함께 선언해야 할 권리들을 '일반적 권리'와 '피해자의 권리'로 나누어 제시했습니다. '일반적 권리'는 기본적 인권의 목록을 최대한 압축하되 그 내용을 재난시와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고민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특화한 것은 그간 한국사회에서 숱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있었지만, 피해자 인권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너무 낮고 피상적이란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보(배)상 받았으면 됐잖아'로 집약되는 인식에 맞서기 위해 유엔의 최신 기준들을 참조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특히 상세하게 다뤘습니다. 성안팀은 유엔의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보장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관한 기본원칙', '불처벌투쟁원칙'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1) 성안팀이 제시한 권리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권리들은 상호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상호의존적이므로 많은 목록이 많은 권리를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선언해야 할 권리의 내용을 제안해주세요.

(예시)

'일반적 권리'
-생명, 생존, 안전에 대한 권리
-알 권리 ① (진실의 추구) ② (정보에 대한 접근) ③ (의견과 표현의 자유)
-권리를 위해 행동할 권리 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② (결사와 집회의 자유) ③ (프라이버시와 명예)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 ① (사회적 안전에 대한 권리) ② (교육권) ③ (일할 권리와 일터에서의 권리) ④ (휴식과 여가, 문화생활에 대한 권리)

'피해자의 권리'
-피해에 대한 인정
-진실에 대한 권리
-정의실현에 대한 권리
-배상에 대한 권리 ① (원상회복) ② (금전적 배상) ③ (재활) ④ (만족) ⑤ (재발방지)
-재발방지와 제도 개혁에 대한 권리

2) 우리가 선언할 권리의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권리조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성안팀은 '생명, 생존, 안전에 대한 권리'라는 이름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제안하는 권리의 내용을 설명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시)
생명, 생존, 안전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누구나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사회 전반의 가치와 제도에 대한 신뢰 속에서 계획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결핍과 공포로부터의 자유 및 권리를 위해 행동을 취할 자유가 인간의 안전이다. 생명·생존·안전에 대한 권리는 개인의 역량을 초과하는 경제적·환경적 및 여타의 위험에 대한 제도적·구조적 장치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특히 각종 재난 시에는 그 결과를 완화할 수 있을 긴급 구제에 대한 권리가 있다.

3) 세월호 참사 이후 지속돼온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과 억압에 많이 분노하셨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로 특히 강조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제안해주세요.

(예시)

피해에 대한 인정

모든 피해자는 자신이 부당한 해를 입었고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을 획득할 권리를 가진다. 피해자는 특히, 정부와 책임 있는 대표자로부터 피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받을 권리가 있다. 피해자는 참사 처리의 모든 과정에서 의미 있는 참여를 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의 참여는 진실규명, 재판, 배상, 재발방지와 제도개혁의 전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장돼야 한다. 또한 실종자의 가족은 피해자의 행방과 운명을 알 때까지 모든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다. 포괄적인 제반 조치가 착수·완료되기 이전인 상황에서는 긴급하고 절실한 구제와 지원이 모든 피해자에게 당장 제공돼야 한다.

5. 의무와 책임

재난 시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일차적 의무는 당사국 정부에 있습니다. 우리는 명백한 의무 방기와 적극적으로 저지른 악행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초국적기업 등 정부가 아닌(그렇지만 정부와 결탁한) 행위자들에 의한 인권침해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부가 아닌 행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기업 자체에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기업 등 권력집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려면 시민들의 정치적 책임이 작동해야 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성안팀은 의무와 책임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자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의무, 공무원의 의무, 기업의 의무, 언론의 의무를 항목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져야 할 의무, 그에 따른 죄과에 대한 처벌과 책임 묻기는 시민이 져야 할 책임(연대할 책임, 집단적 기억을 만들고 전파시킬 책임, 권력에 대한 감시와 혁신 등)과 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의 책임, 시민사회의 정치적 책임, 노동자의 정치적 책임, 시민의 정치적 책임으로 다뤘습니다. '노동자'를 특별히 언급한 것은 기업의 의무에 대응하여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등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1) 국가, 공무원, 기업의 책임과 시민의 책임은 어떻게 구별되어야하는 것일까요? 즉 참사에 있어서 국가, 공무원, 기업에 책임을 묻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할까요? 또한 참사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시민에게 요구되는 책임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 성안팀은 정부의 의무, 공무원의 의무, 기업의 의무, 언론의 의무, 교육의 책임, 시민사회의 정치적 책임, 노동자의 정치적 책임, 시민의 정치적 책임을 다뤘습니다. 이 외에도 또 다른 책임과 의무의 주체가 있을까요?

3) 각각의 의무와 책임의 내용으로 어떤 것을 선언하면 좋을까요?

(예시)

정부의 의무

정부는 대한민국이 당사국인 국제인권법과 헌법에 따라 그 관할권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할 의무를 진다. 특히 정부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시에는 그 위해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을 택하고 이행할 우선적 책임을 진다. 정부는 그 관할권 내 모든 행위자들에 대해 인권존중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기업의 의무

기업은 인권을 존중하는 분명한 정책을 채택하고 사회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기업은 자사의 활동·상품 또는 서비스로 인한 직접적 또는 잠재적 인권 침해와 위협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조사·처벌·배상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규제 정책과 입법이 있어야 한다.

노동자의 정치적 책임

노동자를 비롯해 자신의 노동과 서비스로 사회에 기여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일에서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이 존엄성은 자기의 인격과 안전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에 대해서는 작업중지와 개선을 요구해야 하며 노동자의 이런 권리는 제도와 정책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시민의 정치적 책임

모든 시민은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자신이 연루되어 있고 연대에 기초

하여 책임을 공유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참사 피해자와 관련하여 모든 시민은 그 피해 배상에 관한 책임을 공유하며 참사에 대한 집단적 기억을 만들고 전파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다. 모든 시민은 참사를 야기한 정치와 경제의 구조를 혁신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구조를 만들 책임이 있다.

논의 3

416인권선언운동의 이후 계획과 추진위원의 역할

(1) 앞서 토론한 416인권선언운동의 취지와 목적을 바탕으로 이후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을 모아주십시오.

(2) 416인권선언운동의 이후 계획을 함께 구체화하면서 추진위원의 역할을 논의해 주십시오.

1. 인권선언운동의 풀뿌리 토론을 어떻게 해야 풍성해질 수 있을까요?

- 인권선언운동은 인권선언문에 대한 전국 풀뿌리토론을 주요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에 대한 토론에만 집중될 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인권선언운동의 취지와 목적이 인권선언문 조항에 대한 토론으로 환원되지 않도록 더욱 풍성하게 토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 이번에는 “416 인권선언운동”에 대한 제안문 형태의 글을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조항에만 토론이 집중되지 않고 우리가 왜 이런 운동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영상이 될지, 다른 자료가 될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주십시오.

- 또한 토론의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항을 축조심의 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권리가 무엇인지를 더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과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야 할까요?

2. 추진위원들이 토론을 잘 이끌어나가고 이후 활동을 잘 만들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 인권선언운동은 추진위원들의 힘에 의지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1회 이상의 간담회 조직은 추진위원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토론자리를 만드는 것도 추진위원들이 그 토론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인권선언운동의 취지에 공감하며 앞으로 함께할 사람들을 모으고자 할 때 함께 시작할 다른 활동이 없을지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 인권선언운동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간담회를 할 수도 있고, 국제인권규약이나 국제적인 인권선언문의 의미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쟁점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추진위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추진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혹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논의를 바탕으로 1차 전체회의의 목표와 필수 프로그램, 일정을 결정해주십시오.